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4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박철성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춘선,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6  
명)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나.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 직급 상향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협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제11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협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를 “재난방송협회”로 한다.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단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단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6.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u></p> <p>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 ----- ----- ----- ----- 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u></p>

④ 방송협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⑤ 방송협회 -----  
-----  
-----  
-----.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

인 사람

<삭 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  
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  
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  
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  
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생략)

<삭 제>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 나.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재난방송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재난방송협의회 = 17,0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4,000천원+3,000천원

- 참석수당 = 14,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7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3,0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0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